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9조의 요약

- 사업연도중 주식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으로 주주·지분비율·액면총액 등의 변동)사항있는 법인은 법인세 적법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협 등 조합법인과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등도 제출의무 없음, 중앙회·연합회는 제출 의무없음.
-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외에는 적용제외, 주식회사아닌 법인의 소액주주도 주식 등 변동명세서 적용제외,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1% 미만, 액면 500만원 이하)도 제외
- 주식변동내용 불성실 제출 : 변동액면가×2%의 가산세 적용(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반영된 사항을 기준함)

●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I. 본 조의 개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매매·증자·지분변경 등의 제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본 법 제60조에 의한 적법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증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주식의 이전은 재산적 이해관계의 큰 변동을 의미하는데 상속세·증여세·소득세 및 법인소득의 이전 차원에서 조세채권·채무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의 법인세신고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서류의 기타의 부속서류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보정요구사항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본 조규정으로 강제화 되었다.

이를 위해 본 법 제76조제6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주식변동상황의 누락 제출과 불분명에 대하여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한 주식 등액면가액이나 출자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II.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방법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요건

① 모든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본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즉,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이 속하는 신고기한내에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각종 조합법인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원천면제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면 명세서 제출 안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계산되지 않음). 일반 법인중에서도 주주·출자자 등 숫자는 많고 변동사항이 중요하지 않은 농·수협 등의 조합법인과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원천면제된다.
그러나 농협 등 중앙회·연합회 등은 제출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2009. 2. 4 개정)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2009. 2. 4 개정)
 -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2009. 2. 4 개정)
 -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 **시행규칙 제79조의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별표 11] (2009. 3. 30 개정)

공공기관의 범위 (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공 공 기 관
1	한국 전력 공사
2	한국 조폐 공사
3	대한 석탄 공사
4	대한광업진흥공사
5	한국 석유 공사
6	한국 도로 공사

7	대 한 주 택 공 사
8	한 국 수 자 원 공 사
9	한 국 토 지 공 사
10	한 국 철 도 공 사
11	한 국 관 광 공 사
12	한 국 농 촌 공 사
13	농수산물유통공사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시행령 제1조 【정 의】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6. 2. 9 개정)
2. 삭 제 (99. 12. 31)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1. 12. 31 개정)
5. 「업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연초생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 제 (99. 12. 31)
7. 삭 제 (99. 12. 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③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는 제출, 그 외는 제외가능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외의 주주 그리고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1% 미만, 액면 500만원 이하) 또는 소액출자자 및 주식회사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금액에 대해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배주주 또는 소액주주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배주주로 보며, 또한 소액주주는 어느 한 날 이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009. 2. 4 개정)
 -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2009. 2. 4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신설)

▲ **시행규칙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 및 제출처

① **기재요건 및 제출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 등 인적사항, 주주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기재되는 주주별 주식보유현황·변동사항 등 기타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반영된 사항만 명세제출되며, 주주가 명의개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법인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명세제출 대상이 아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삭 제 (2005. 2. 1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여기서 주주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지만 변동사항 없는 경우 미제출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본 법 제76조제6항 : 가산세 = 변동사항미제출, 누락 제출, 불분명제출 주식액면가×2%).